

시민 보호 명령 획득에 대한 지침

본 표준 지침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규칙과 절차에 구속됩니다.

소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일반 정보

- ◆ 임시 또는 영구 시민 보호 명령은 성인 또는 만 10 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습니다.
- ◆ 보호 명령은 접근금지명령 대상자가 피보호자에게 연락, 괴롭힘, 상해, 위협, 추행, 협박, 신체적 접촉, 스토킹, 성폭행 또는 학대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지에 진입하거나 머물거나, 피보호자 또는 부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거나, 피보호자가 보유, 소유, 대여, 사육, 보호 중인 동물을 횡령, 이전, 은폐, 상해, 제거 또는 위협하는 것을 금하는 일체의 명령 또는 기타 생명 또는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모든 조항을 뜻합니다.
- ◆ 해당 소장/신청서의 대상인 행위가 발생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거주 중이거나, 일방 당사자의 직장이 소재한 일체의 카운티는 재판 장소로 적절합니다.
-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명령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 법원에 가족 관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콜로라도 개정 법령 §13-14-104.5, §13-14-105, §13-14-105.5, §13-14-106 을 검토하십시오.
- ◆ 장애가 있어 귀하의 법원 출석을 위해 합당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s.state.co.us/Administration/HR/ADA/Coordinator_List.cfm

상용 용어

- ☒ 신청인: 개인에 대하여 소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 ☒ 피신청인: 소장/신청서 제출의 대상인 개인.
- ☒ 소장/신청서: 보호 명령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서류.
- ☒ 가정 학대: 어떠한 인물이 현재 본인의 친족, 같은 거주지상의 동거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거나 과거에 그러한 경력이 있는 타인에게 행하는 일체의 폭력, 스토킹, 학대 또는 강박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 또는 협박.
- ☒ 피보호자: 보호 명령을 받은 개인 또는 사업체.
- ☒ 접근금지명령 대상자: 타 인물 또는 사업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개인.
- ☒ ~할 수 있다: 법령 용어에서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 ~해야 한다: 법령 용어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상기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수수료

법원은 보호 명령을 구하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구하는 개인은 가정 학대, 스토킹,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85.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을 구하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시, 법원은 영구 보호 명령 심리에서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에게 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서류 복사 | 페이지당 75 센트 |
| <input type="checkbox"/> 인증 수수료 | 서류당 \$20.00 |
| <input type="checkbox"/> 송달료 | 유동적임(송달인에게 지불 가능) |

양식

온라인 양식에 접근하려면 www.courts.state.co.us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Forms” 탭을 클릭하십시오. “Protection Orders”를 선택하여 PDF 또는 WORD 형식으로 패킷/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한 후 인쇄하거나, 미작성 상태로 인쇄한 후 검은색 잉크로 정자로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귀하에게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JDF 401 | 사건 체크리스트 |
| <input type="checkbox"/> JDF 402 | 인증된 보호 명령 소장/신청서 |
| <input type="checkbox"/> JDF 404 | 자녀 관련 진술서 |
| <input type="checkbox"/> JDF 442 | 보호 명령 등록 정보 서식 |

소송 제기 단계

1 단계: 해당 양식 작성.

상기한 필요 양식 목록을 참조하여 귀하의 개인 상황에 따라 어떠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법원에 문의하여 보호 명령 심리의 구체적인 예정 일시와 해당 법원이 소장/신청서 제출에 요구하는 기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증된 보호 명령 소장/신청서(JDF 402).**
 - 해당 양식의 모든 필수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호 명령을 구하는 이유를 적시하십시오.
 - 탄원에 귀하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소장/신청서의 6 번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4 페이지의 공간에 대체 우편 주소를 추가하십시오. 대체 우편 주소의 예시로는 사서함, 가족 또는 신뢰하는 친구의 우편 주소 등이 있습니다.

사건 체크리스트(JDF 401).

본 양식을 작성하면 심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소장하여도 되고, 귀하의 소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할 시 본 양식은 공공 기록의 일부가 되며 소장/신청서의 일부로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자녀 관련 진술서(JDF 404).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 및 통제권, 임시 의사결정권 또는 양육 시간을 청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는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보호 명령 등록 정보 서식(JDF 442).

이 양식을 작성한 후 인증된 보호 명령 소장/신청서(JDF 402)에 첨부하십시오.

보호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2 단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 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공하십시오.

소장/신청서 및/또는 진술서를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때 법정에서 소장/신청서 및/또는 진술서에 서명하십시오.

3 단계: 임시 보호 명령 심리.

귀하의 임시 보호 명령 요청과 해당하는 경우 자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법원이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시 귀하에게 해당 사실이 적시된 서면 명령서가 제공됩니다.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명령서의 사본을 인증받으십시오. 필요한 사본의 개수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소장할 사본과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에게 송달할 사본이 각각 한 개씩 필요합니다.

귀하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 및 통제권, 양육 시간 및/또는 임시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었거나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에게 미성년 자녀와의 접촉을 금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귀하의 직장, 자녀의 학교, 택야 업체 등에 보낼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 명령서와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상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4 단계: 교부송달 완료.

영구 명령 심리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음 심리일 전에 콜로라도주 민사소송규칙 4(e)에 따라 소장/신청서, 임시 보호 명령서 그리고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타 당사자에게 교부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구 명령 심리는 임시 명령 심리로부터 14 일 내에 열리며, 법원이 양육 시간과 의사결정권을 다루기 위하여 향후 심리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송달에 유용한 도움말:

- ❑ 보안관, 사설 송달리 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며 각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 만 18 세 이상의 지인에게 소장/신청서, 임시 보호 명령서 그리고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전달하십시오.
- ❑ 해당 보안관, 사설 송달리 또는 개인 송달인에게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귀하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 ❑ 영구 명령 심리일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임시 보호 명령서와 함께 반환받은 송달 진술서/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해당 양식들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을 완료하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기타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5 단계: 영구 명령 심리.

법원에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또는 귀하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인에 대하여 법원이 증인 소환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 ❑ **임시 보호 명령을 획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 명령서에 적시된 예정 시일에 영구 명령 심리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음 심리에 출석하십시오. **결석 시 귀하의 임시 보호 명령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 ◆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원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 법원이 영구 보호 명령을 내릴 시 귀하에게 해당 사실이 적시된 서면 명령서가 제공됩니다. 영구 보호 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명령서의 사본을 인증받으십시오. 필요한 사본의 개수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 본인이 소장할 사본과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에게 송달할 사본이 각각 한 개씩 필요합니다.
 - ❑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에게 미성년 자녀와 접촉을 금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귀하의 직장, 자녀의 학교, 탁아 업체 등에 보낼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금지명령 대상자가 심리에 출석한 경우 법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교부송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접근금지명령 대상자가 심리에 결석하였으며 영구 보호 명령의 내용이 임시 보호 명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교부송달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교부송달에 유용한 도움말:**
 - ❑ 보안관, 사설 송달리 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며 각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 만 18 세 이상의 지인에게 소장, 영구 보호 명령서 그리고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전달하십시오.
 - ❑ 명령서를 송달하는 보안관, 사설 송달리 또는 개인 송달인에게 송달을 완료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귀하에게 반환하고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 ❑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가능한 추후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명령서와 송달 진술서/증명서의 사본을 상시 소지하여야 합니다.